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7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5-19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
2025-193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기업과)	5
2025-194	거창군 현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11
2025-19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정책과)	17
2025-19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23
2025-19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29
2025-19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3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92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을 위한 특별휴가와 공무원의 생일축하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세부기준 삭제함(현행 제23조제2항·제7항)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재기재 삭제

나. 특별휴가 확대함(안 제23조제6항·제7항)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스토킹·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공무원: 5일 이내

2) 공무원 본인의 생일: 1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1. 5.~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심신 안정을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⑦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그달 또는 다음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p> <p>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p> <p>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p> <p>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p> <p>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p>	<p>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p> <p>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p>

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군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식휴가를 줄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 설〉

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식휴가를 줄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작 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심신 안정을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⑦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그달 또는 다음 달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93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외 이전 및 공장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2조·제22조)
- 나.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함(안 제5조)
 - 1) 성폭력범죄 사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다. 기업유치 특별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
 - 1) 특별지원 범위에 개별입주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을 포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3,000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15.~11. 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건축물을 신축
-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 3) 폐건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매입

나. 증설: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5조제4호를 제7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군의회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증설”을 “신설·증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p> <p>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p> <p>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p> <p>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 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p> <p>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p> <p>가. 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3) 폐건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매입 <p>나. 증설: 기존 사업장의 건축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p> <p>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p> <p>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p> <p>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 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p> <p>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p>	<p>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p>

<p>되는 경우</p> <p>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u><신 설></u></p> <p><u><신 설></u></p> <p>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u>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u>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u>증설</u>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되는 경우</p> <p>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u>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u></p> <p><u>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u></p> <p><u>7.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군의회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u></p> <p><u>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u>신설·증설</u>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기업유치 특별지원 범위 확대
- 나. 관련조문: 기업유치 특별지원(안) 제21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군비	-	-	3,000			3,000

3. 관련 의견

기업유치 특별지원 대상에 ‘개별입주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의 성장을 돋고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관내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특별지원

: 입지보조금 군비 3,000백만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94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군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하여 기념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신설하여 헌혈을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헌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신설함(안 제6조)
 - 1)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 지원
 - 2) 헌혈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
- 나. 헌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을 정함(안 제7조)
- 다. 법령 재기재 삭제·정비함(현행 제8조·제9조)
 - 1) 「혈액관리법」 제7조의2·제12조, 「지방자치법」 제2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3) 2025년 거창군 조례 입법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4,500천원 확보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14.~11.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거창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헌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① 군수는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2.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7조(현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현혈장려 및 현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혈인식 개선을 위한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2. 현혈 관련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현혈장려와 현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p>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헌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수는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장려를 위하여 헌혈자

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현혈 및 현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현혈장려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현혈권장활동 및 현혈장려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현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2.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하고 안전한 현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7조(현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현혈장려 및 현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혈인식 개선을 위한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2. 현혈 관련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현혈장려와 현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거창군 현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현혈자에게 기념품 등 제공
- 나. 관련 조문: 현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나. 2025년 예산 4,500천원 확보
 - 1) 홍보물 제작·구입: 4,500천원
 - 2) 2024년 현혈자: 243명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195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증 장려 대상에 인체조직을 신설·확대하고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폐지·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증 장려 대상에 인체조직을 신설함(안 제명 및 전 조문)
- 나.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수립을 정함(안 제2조~제4조)
- 다. 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라. 예우 및 지원을 정함(안 제6조)
- 마. 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를 정함(안 제7조)
- 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삭제·정비함(현행 제4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 2025년 거창군 조례 입법 평가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 나. 예산조치: 사안 발생시 확보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14.~11.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
3. 장기등기증자·조직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 장기등기증희망자·조직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기증자, 기증희망자를 적

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군이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② 군수는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경우(뇌사자에 한정한다)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에 따른다)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군민에게 기증 또는 기증 희망하는 사람

제7조(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참여 확산을 위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 창구를 보건소 등에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사람은 제6조에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진료비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③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장기기증 장려활동을 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2)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 지원

나. 관련조문

- 1) 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2) 예우 및 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장기기증활동 지원을 위한 등록 기관·단체 없음

나. 뇌사자 장기 기증 최근 5년: 2건(2021년, 2024년)

다. 2건 * 1,000천원 = 2,000천원

※ 기증자 유족 신청시: 예산 확보 예정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96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입목축적 적용사항 변경함(안 제20조)
- 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조례로 위임된 중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 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요건 완화에 농림지역 추가함(안 제50조)
- 라.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경로당 신설함(안 별표 18)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70조의13, 제79조, 별표 1의2, 별표 19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31.~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목축적은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적합해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페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페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u>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u></p> <p>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p> <p>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④ (생략)</p> <p>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p> <p>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u>입목축적은 「거창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적합해야 한다.</u></p> <p>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p> <p>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p> <p>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신 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페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페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페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생략)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2. 영 별표 19 제2호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로당만 해당 <신 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균린생활시설과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균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체험관에 한정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97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구를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요금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4)

- 1) 대상: 병역명문가
- 2)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안전총괄과 협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0. 20.~11. 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하수도 요금

[별표 4]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다. 규칙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라.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 설>		
마.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페센트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70페센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50페센트	
차.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	30페센트	
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60페센트 40페센트 20페센트
타.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2년차 3년차	30페센트 20페센트 10페센트
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페센트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u>하.</u> 공공목적의 소방용수	100퍼센트

비고

1.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가목에서 차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3.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함
4. 가목에서 라목까지는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마목은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타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 정상요금을 적용함
6. 파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병역명문가 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가정용 1단계 요율 5톤 기준)으로 세입(사용료 수입) 감소
- 나. 관련 조문: 상수도요금 감면율(안 별표 4)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가. 병역명문가 가구 감면 규모는 2025년 8월 기준 등록 가구(93가구)를 적용하였을 때,
 - 1) 월 감면액: 약 3,870원 × 93가구 = 359천원
 - 2) 연간 감면액: 약 4,318천원(약 430만원)
- 나. 연간 소요 예산은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수도사업소장 박 길 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98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구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요금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7)

- 1) 대상: 병역명문가
- 2)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6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안전총괄과 협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0. 20.~11. 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하수도 요금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다. 규칙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라.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신설>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100퍼센트
바.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자.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2년차 3년차 30퍼센트 20퍼센트 10퍼센트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비고

1. 가목에서 아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
4. 차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병역명문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가정용 1단계 요율 5톤 기준)으로 세입(사용료 수입) 감소
- 나. 관련 조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안 별표 7)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가. 병역명문가 가구 감면 규모는 2025년 8월 기준 등록 가구(93가구)를 적용하였을 때,
 - 1) 월 감면액: 약 1,060원 × 93가구 = 98천원
 - 2) 연간 감면액: 약 1,182천원(약 110만원)
- 나. 연간 소요 예산은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수도사업소장 박 길 규